

독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최근 미국 Enron 에너지 중개회사 파산을 계기로 기업 경영진의 지도감독 강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 주요 자료 / 기사

◆ 독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1. 추진 배경 및 개요

- 독일의 경우 불황의 여파로 기업파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기업경영이 불투명하여 경영진의 전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감시, 주주 및 투자자 보호 등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독일정부는 주식법, 회계법, 경영기본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신규입법 추진하고 있음
 - 독일연방각의는 기업투명성 및 공시법안(Transparenz und Publizitätsgesetz)을 의결(2. 6일)한 뒤, 연방정부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기업지배관리준칙(Corporate Governance Kodex)을 확정·발표 (2. 26일)
- 현재 동 「법안」 및 「준칙」은 여론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금년중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2. 지배구조 개선추진 내용

가. 법규적 체계

- 기업투명성 및 공시법안(Transparenz-und Publizitaetsgesetz)에서 상장기업 내부

감사회(Aufsichtsrat) 권한 및 주주총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대부분 실제 내용은 기업지배관리준칙(Corporate Governance Kodex)에 반영

- 모든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관리준칙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매년 감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상 자율준수 형식을 도입
 - 동 준칙은 50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변화에 개혁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규정으로 하고 동 준칙 준수 여부만 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가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함

나. 개선 내용

< 기업 경영조직의 기능 개선 >

- 감사회의 독립성, 기능 및 권한 강화
 - 감사회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자문 및 경영감시를 하고, 투자 등 기업의 중요 사항 결정시 감사회가 이를 공동검토하며, 영업 실적이 당초의 계획과 차이가 난 경우 이사회는 이를 감사회에 통보하여야 함
 - 이사회 舊임원중 감사회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회 구성원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타 기업 감사회 참여시 참여 기업수도 종전의 10개사에서 5개사로 축소. 또한 감사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감사의 감사회 보고권한 및 회의 개최 요구권한을 확대
- 감사회 · 이사회 임원의 의무 강화
 - 이사회는 기업의 모든 금융정보 자료를 주주 ·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소속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과의 직업 · 금전 기타 모든 관계를 공개하여야 함
 - 모든 임원의 보수는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하고(무제한적 보수관행 차단), 보수내용도 공개하여야 함 (회계보고서 부록에 임원보수의 명세를 첨부)

- 이사회·감사회간의 이해충돌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상호공개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감사회 구성원이 영업기밀을 누설시 처벌을 강화

- 감사회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보고서를 문제 지향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예컨대,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보다 미약한 이의제기(Beanstandung)수준까지도 인지하여 대처하여야 함

- 감사회 구성원은 최소 3인에서 납입자본금에 따라 최고 21인까지 두도록 차등화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근로자 대표중에서 선출

< 기업 외부기능 개편 >

- 주주의 기능 및 권한 강화
 - 주주의결권 한도제도(Hoechststimmrechte), 우선주제도(Mehrstimmrechte)를 폐지하여 모든 주주의 권리가 동일하도록 단일화 (1주 1표제)

 - 이익배당시 배당금의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증권·주식옵션 등으로 확대하고, 주주권 행사방식도 주총회의장 참석에서 사내 TV 중계, 인터넷 등으로 확대

- 기타,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중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없이 동 법인 감사회에 통보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매년 준칙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필요시 이를 개선하고, 기업이 동 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함

3.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

- 그 동안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분리하는 이종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에 영·미식 모델인 위원회 제도(Board System) 일부를 가미함으로써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혁신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됨
 - 독일의 현행 기업 지배구조인 라인식 자본주의 모델은 강력한 지배권을 가진 소유 경영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헌신과 안정적 노사관계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내부자 담합을 규율하면서 조직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주와 투

자자 보호에도 미흡하여 영·미식 모델에 비하여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동 개편안의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기존제도와의 상충문제도 남아 있어, 금번 도입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됨
 - 동 준칙은 법적 준수의무가 아닌 단순한 제안 또는 추천 규정으로 위반시 제재가 미약하고,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명목으로 준칙 준수를 강제화할 경우 위험소지의 문제도 제기
 -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수법은 독일기업에 대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준칙은 임원들에 대하여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제안(Anregung)하고 있어, 양 제도간 상충문제 발생
 - 현재 폴크스바겐법(VW-Gesetz)은 폴크스바겐 자동차회사 주주중 20% 이상 대주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주정부인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 대하여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데, 슈뢰더 연방총리는 이 제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금번 1주 1표제 도입취지와 상충
- 또한 독일기업의 대표적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지적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 : 감사회 의사결정시 노조대표가 참여하여 주주대표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시정되지 않은 점도 실효성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기
- 위와 같이 영·미식 모델과 라인식 모델의 절충이 모든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는 없으나, 기업의 동 준칙 준수 여부 및 건전성 제고 가능성 여부는 시장에서 평가될 것이므로 기업들이 대외신뢰도 제고 및 자체 홍보를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동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해가 지배적임.